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
보도참고자료

http://www.mke.go.kr

문의 : 무역구제정책팀 윤상흠 팀장(2110-5551), 권영희(2110-5552)·최영학 사무관(2110-5553)

무역위, 복분자주·골프웨어 업체에 무역피해 인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는 11.24(수)에 열린 제284차 무역위원회에서 **(주)너트클럽(대표 한수석, 골프웨어 업체), (주)선운산복분자주 홍진(대표 임종훈, 복분자주 업체) 등 2개 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대하여 무역피해가 있다고 심의·의결**함

* 무역조정지원제도 :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융자,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('08년~)

□ (주)너트클럽에 대해서는 **한-ASEAN FTA 발효('07.6) 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하여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**가 있었다고 인정함

○ 의류제품의 기본관세는 13%였으나 **FTA발효로 8%가 되었고 세부품목별로 '08년부터 무관세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**(발효시 8%→ '08년 5%→'09년 3%→'10년 0%)됨

○ 이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**업체가 제시한 피해기간('08.10~'09.3) 중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65.8%, 물량은 107.4% 증가**하였고,

* 베트남산 제품 수입
 - ('07.10~'08.3) 13,048천불, 527,132kg → ('08.10→'09.3) 21,639천불, 1,093,207kg

○ 국내 골프웨어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**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수량,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**됨

□ (주)선운산복분자주 홍진에 대해서는 **한-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복분자주 업체의 피해**가 있다고 인정함

○ 동 건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로서 **복분자주와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넓게 인정**

○ 한-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*되면서 **칠레산 레드와인이 전체 레드와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**했고, 업체가 제시한 피해기간('10.1~6) 중 레드와인 수입도 10.5% 늘었으며,

* 관세(%): ('04) 12.5 → ('05) 10 → ('06) 7.5 → ('07) 5 → ('08) 2.5 → ('09) 0
** 칠레산 비중(%): ('04) 15.2→('05) 19.8→('06) 19.9→('07) 23.1→('08) 29.9→('09) 31.7

○ **복분자주 대비 칠레산 레드와인의 평균가격도 피해기간 중 42% 정도 저렴**한 것으로 나타남

○ 이에 따라 동 기업은 **주 거래처에서 수량,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으며, 매출·생산 등이 25% 이상 감소**하였음

□ 신청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될 경우, **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자금 및 융자자금을 지원**받게 됨

○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**총 5개 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, 대부분 매출 증가 및 구조조정을 완료**하였음

○ **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**은 앞으로 미국, EU 등 주요국과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여, **FTA 시대에 공정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**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

<참고>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**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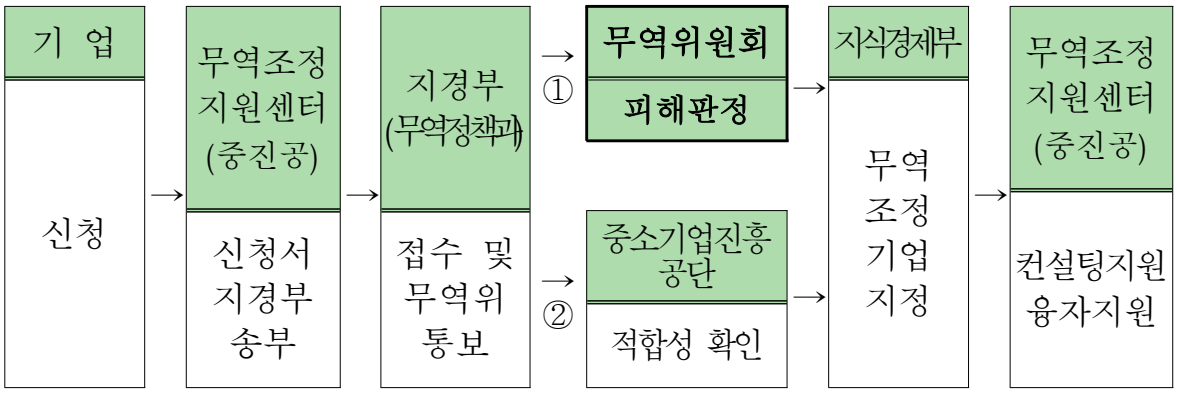
□ **(요건)** ①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, ②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, ③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25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지식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중진공에서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지경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효과)**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, 컨설팅 자금의 80%를 지원하고,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업체당 24백만원 이내(소요비용의 80% 지원)

○ 융자: 시설(30억원내, 거치포함 8년)·운전자금(5억원내, 거치포함 담보 5년, 신용 3년), 금리(공자기금-0.7% 변동; '10년 4/4분기 기준 年3.59%)